
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상속포기자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으로 간주함(안 제24조제2항).
-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과점조합원 간 손익분배비율을 정한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이 출자액의 비율과 다른 경우,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금액에 과점조합원의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액수를 과점조합원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액으로 함(안 제39조).
- 국세청장이 국세의 부과·징수·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국세공무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4조의3 신설).
- 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해당 납세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5조의7 및 제85조의8 신설).

Ⅱ. 검토의견 : 이행강제금 감경·면제의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

○ 개정안은 제85조의7(이행강제금) 및 제85조의8(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)를 신설하여 본사가 외국에 소재하는 다국적 기업 등 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,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해당 납세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.

이행강제금은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수입금액의 1천분의 3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, 평균수입금액이 없거나 평균수입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일당 500만원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음.

○ 다만, 개정안 제85조의7제4항에 따르면,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장부등의 제출이행을 위한 노력과 불이행의 정도·사유 또는 세무조사 결과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.

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는 심의위원회로서,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가 지방국세청장을 구속하지는 않으나, 그 부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침에도 그 감면은 청장이 별도 절차 없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바,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감면에 모두 위원회의 심사절차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체계상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.

○ 따라서, 개정안은 이행강제금 부과 및 감면절차에서의 정당성 제고, 이행강제금 액수가 타 입법례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, 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감경·면제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도록 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제시함.

<수 정 의 견>

개 정 안	수 정 의 견
제85조의7(이행강제금) ① ~ ③ (생략)	제85조의7(이행강제금) ① ~ ③ (개정안과 같음)
④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장부등의 제출이행을 위한 노력과 불이행의 정도·사유 또는 세무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	④ ----- ----- ----- -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----- -----.
⑤ (생략)	⑤ (개정안과 같음)

○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경미한 자구수정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(주서본 참조).

(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)